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4

제 출 일 : 2026. 10. 2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○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

2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조성)

○ 「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경영지원)

3. 주요내용

○ 2027년 출연금 : 695백만원

○ 사 업 명 :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

○ 사업내용 :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(최대 5억원), 창업·경쟁력강화자금(최대 30억원)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

○ 출연금 개요
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지원내용 :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

○ 출연기관 : 경기도

○ 출연현황 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1982~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출연금	7,925	3,842	238	294	826	1,088	837	800

○ 지원실적 (단위: 백만원)

2021년	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
업체수	금액	업체수	금액	업체수	금액	업체수	금액	업체수	금액
1,728	101,842	1,089	87,717	1,081	76,633	913	64,931	1,022	105,186